

무배당 행복디자인어린이보험

확 인 서

무배당 행복디자인어린이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4년 1월 28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행복디자인어린이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명칭	종류
무배당 행복디자인어린이보험	1 종(순수보장형)
	2 종(행복자금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 종(순수보장형)	2 종(행복자금형)	
30 세만기	일시납	0~15 세	0~15 세	일시납
	5년납	0~15 세	0~15 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10년납	0~15 세	0~15 세	
	15년납	0~15 세	0~13 세	
	20년납	0~10 세	0~9 세	

※ 다만, 0 세는 태아 가입을 제외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2명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0.5%, 3명 이상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나. 최초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추가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을 신청 또는 변경하고, 신청 또는 변경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해당 할인을 적용하여 이를 영수한다.

다. '가' 내지 '나'의 경우 계약자는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라. 금융기관 자동이체시의 할인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에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하며,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12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타

가. 이 보험에서 1 구좌는 보험가입금액 2,000 만원으로 한다.

나.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인하나 보험금증액 등을 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